

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2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「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고 「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무형문화재 조항을 삭제함.

4. 주요내용

- 도지정문화재의 지정 중 무형문화재 조항 삭제 (안 제24조)
-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중 무형문화재 조항 삭제 (안 제30조)
- 무형문화재의 보호·육성 조항 및 전수교육 조항 삭제 (안 제41조~제44조)
- 도지정무형문화재의 기·예능 공개 조항 삭제 (안 제56조)

5. 검토의견

- 위 개정조례안은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「문

「문화재보호법」에서 분리·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.

- 향후 근대문화유산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재 관리에 있어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